

#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유치물인도청구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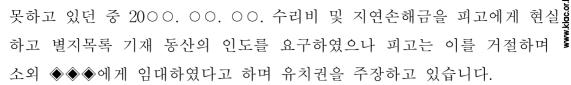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, 그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금 5.000,000원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

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1. 별지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입니다. 그런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고장으로 인하여 20○○. ○. ○.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. 그리고 현재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시가는 금 5,000,000원 상당입니다.
- 2. 한편, 피고는 2000. 0. 00.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수리를 완료하고 수리비 금 1,500,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. 이에 원고는 당일 수리비를 지급하지



3. 따라서 원고는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 일체를 변제공탁하고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, 만약 그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대상으로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시가 금 5,000,000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물품수리견적서

1. 갑 제2호증

변제공탁서

#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납부서

1통

 20○○.
 ○.
 ○.

 위 원고
 ○○○
 (서명 또는 날인)



# 동산의 표시

콤푸레샤 1개

물건소재지 :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길 ㅇㅇ ◎◎공업사 공장 내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<b>^^</b>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<ul> <li>어느 물건의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구하는 예비적 대상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"인도불능일 때" 또는 "인도하지 않을 때"라는 문언은 "집행불능의 때"의 의미로 보아야 함(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5다308 판결).</li> <li>・목적물의 인도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으로써 인용하여야 함(대법원 1959. 10. 15. 선고 4292민상432판결).</li> <li>・비료현물 47가마의 인도를 명하고 현물로서 인도가 불능한 시는 매가마당 현시가 금 3,000원의 비율의 환산대금의 지불을 명한 판결에 있어서 동 비료 매가마당 3,000원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본래의 급부에 대한 장래에 있어서의 집행불능에 기인하여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취지가 분명하고 이 경우에 손해배상의 산정은 구두변론종결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(대법원 1961. 10. 5. 선고 4293민상172 판결).</li> </ul>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를 생물 생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